

2017년 이사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7. 05. 23(화) 14:00

2. 장 소 : 법인사무실

3. 참석임원: 대표이사 장영순, 이사 이상주, 이사 이충호, 이사 이상문
이사 권도국, 감사 하상준(이사 총 7명중 5 참석)

참석직원: 김인수법인국장, 진영곤원장

4. 심의안건: 제1호 2016학년도 인천예림학교회계 결산
제2호 2017학년도 인천예림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
제3호 2017년도 핸인핸 부평지점 2차 추가경정예산(안)

5. 회의내용

1)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
◦ 장영순의장 :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2) 전차회의록 접수승인

◦ 장영순의장 : 간사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케 하고 이의여부를 물은 결과, 이사진 전원이 이의 없다고 답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승인하기로 선포하다.

3) 감사보고

◦ 장영순의장 : 2016학년도 인천예림학교 감사보고를 하상준감사에게 요청하다.

◦ 하상준감사 : 2016학년도 인천예림학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낭독하다.

◦ 권도국이사 : 두 분 감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리고,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.

◦ 이상문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◦ 장영순의장 :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감사보고서를 접수하다.

4) 안건심의

- 제1호 의안 : 2016학년도 인천예림학교회계 결산

- 장영순의장 : 2016학년도 인천예림학교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.
- 김인수법인국장 : 2016학년도 인천예림학교회계 결산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
세입(수입)		단위: 원	세출(지출)		단위: 원
과목	금액	산출내역	정책사업	금액	산출내역
이전수입	4,111,191,720	재정결합보조금등	인적자원운영	2,896,341,900	교직원보수등
자체수입	140,455,809	현장체험학습비등	학생복지/교육격차해소	545,504,486	급식,보건관리등
기타	268,155,050	전년도이월금등	기본적교육활동	380,007,051,	교과창의활동
			선택적교육활동	144,051,950	교기육성,독서활동
			교육활동지원	48,776,580	교무,학습지원,여건개선등
			학교일반운영	313,191,362	부서기본운영,시설장비유지
			학교시설확충	173,126,230	
			이월금	18,803,020	목적사업비,계속사업비포함
계	4,519,802,579		계	4,519,802,579	

- 장영순의장 :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이상주이사 : 하상준, 문덕인 감사님께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실적과 결산을 검토하신바,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.
- 권도국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- 장영순의장 :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1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을 선포하다.
 - 제2호 의안 : 2017학년도 인천예림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
- 장영순의장 : 2017학년도 인천예림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.
- 김인수법인국장 :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결합보조금과 목적사업비 교부로 인한 예산의 조정이며, 기정예산액 4,119,587천원에서 추경예산액 4,463,474천원으로 343,887천원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장영순의장 :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이상문이사 : 검토해 보니, 부득이한 세입 및 사업의 변동에 따른 합당한 세출예산의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.
- 이충호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- 장영순의장 :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2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을 선포하다.
 - 제3호 의안 : 2017년도 핸인핸 부평지점 2차 추가경정예산(안)
- 장영순의장 : 2017년도 핸인핸 부평지점 2차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.
- 진영곤원장 : 인건비 및 기능보강사업비, 자산취득비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정이며 1차 추경예산액 2,102,719천원에서 2차 추경예산액 2,154,825천원으로 52,106천원 증액된 2차 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
- 장영순의장 :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이상주이사 : 검토해 보니, 부득이한 세입 및 사업의 변동에 따른 합당한 세출예산의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.
- 이상문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- 장영순의장 :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3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.

6. 폐회

- 장영순의장 : 폐회동의를 확인한 결과, 전원이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고 15:00에 폐회하다.

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다.

2017. 05. 23.

